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25

발의연월일: 2024. 8. 21.

발 의 자 : 허 영 • 이병진 • 박민규

김태년 · 김현정 · 송옥주

박 정ㆍ이기헌ㆍ맹성규

황정아 • 권칠승 • 조인철

박지원 · 이재관 · 박정현

김남근 • 강준현 • 송기헌

박수혂 • 박희승 • 허성무

박해철 • 채현일 의원

(239])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경계선지능인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리고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또는 경계 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조 례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 원 규정이 부재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 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경계선지능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 등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자립지원,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양육지원, 교육지원, 보호자 지원 및 평생교육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 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1조).
- 아.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둠(안 제22조).
-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역량 강화 및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함(안 제23조).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익보호 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4 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경계선지능인의 권리) ① 경계선지능인은 자신의 행위와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경계선지능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

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경계선지능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및 생활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인지능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리보장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 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고, 국민이 경계선지능인을 올바르게 이해 하도록 인식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 3.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이하 "지원서비스"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계선지능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경계선지능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경계선지능인의 신청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경계선 지능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 인별 지원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 및 제4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 제10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이하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서비스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 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 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과 제 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경계선지능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경계선지능인 또는 그 보호자는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의 절차를 따른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경계선지능인과 지원서비스제공기관 연계) ①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계선지능인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연계하여야 한다.
 - ②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지원서비스제공 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지원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 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경계선지능인 지원 등

-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경계선지능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 보호자, 제20조에 따른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또는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② 법원은 경계선지능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경계선지능인 본인, 그 보호자, 검사, 제20조에 따른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또

- 는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경계선지 능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경계선지능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라야 한다.
- 제1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방법의 개발,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진단검사 실시,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자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단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결과에 따라 지원서비스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경계선지능인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진단 실시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인 아동·청소년(이하 "경계선지능학생"이라 한다)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 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실시하는 학교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필 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제2항에 따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자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기본법」 제3조제 1호에 따른 청년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하여 자산의 형성 및 관리를 지원하거나 경제·법률·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 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 소개,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지

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7조(자녀양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의 내용과 제공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교육과정의 내용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 선지능인의 보호자가 미성년자인 경계선지능인을 적절하게 보호하 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의 내용과 제공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20조(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 2. 경계선지능인 조기 진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 경계선지능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지원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 람 마련 및 교육지원
 -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 6.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개발
 - 7. 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 8.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2.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
-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지원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
- 4. 경계선지능인 조기진단 실시 및 지원 정보 연계
- 5. 경계선지능인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보 관리
- 6. 경계선지능인의 자조모임 지원
- 7.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사례관리
- 8.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 9. 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 접수 및 지원
- 10.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경계선지능인의 수 및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하나의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및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선지능인지원센

- 터의 설치·운영,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 및 소속 직원의 자격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22조(경계선지능인교육운영위원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 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경계선 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 ②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 제23조(경계선지능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 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

- 계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관련 단체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 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및 벌칙

- 제25조(비밀유지 의무)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 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 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지

원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27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 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28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 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9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에 규정된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